

개정 전	개정 후
대해서는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.	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
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감면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서 생략)